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체육청소년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선수육성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5조(장애인체육 선수 육성)의 “5명이내의” 를 “필요한 경우에”로 변경하였습니다.
-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 안 제23조의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5조를 “(운영)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해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8조제1항을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2. 12. 21일부터 2023. 1.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1.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014
----------	----------

제출년월일: 2023. 1. 20.
제출자: 달서구청장
(체육청소년과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선수육성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6조 및 제2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2. 21. ~ 2023. 1.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 를 “두 차례만” 으로 한다.

제15조 중 “5명이내의” 를 “필요한 경우에” 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3조 중 “설치·운영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운영)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 · 의결 후 해촉한다.

제26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p> <p>② (생 략)</p> <p>제15조(장애인체육 선수 육성)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하여 <u>5명이내의</u> 우수 장애인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p> <p>제16조(선수선발) 제15조의 선수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p> <p>1. ~ 3. (생 략)</p> <p>제23조(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선수의 선발·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2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p>	<p>제6조(임기) ① ----- --- <u>두 차례만</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장애인체육 선수 육성)----- ----- -----<u>필요한 경우에</u>----- -----.</p> <p>제16조(선수선발) ----- ----- -----<u>제23조에 따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3조(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설치)----- ----- ----- ----- -----<u>설치 · 운영할 수 있다.</u></p> <p>제25조(운영)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p>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생 략)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 · 의결 후 해촉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령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 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